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2189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단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분 재산세 30,028,870원, 지방교육세 6,005,780원, 2014년도분 재산세 31,590,240원, 지방교육세 6,318,050원, 2015년도분 재산세 32,233,750원, 지방교육세 6,446,750원, 2016년도분 재산세 41,956,020원, 지방교육세 5,697,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의학적, 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며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redacted]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0. 4. 11.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대지 64,846㎡, 같은 동 [redacted] 대지 824㎡ 합계 65,670㎡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2. 9. 1. [redacte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준공, 이전한 후 위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위 병원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아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 부지 중 일부인 3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병원과 별도의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고 환자가 출입할 수 없는 경사진 임야여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9. 11. 원고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 30,028,870원, 지방교육세 6,005,780원, 2014년도분 재산세 31,590,240원, 지방교육세 6,318,050원, 2015년도분 재산세 32,233,750원, 지방교육세 6,446,750원, 2016년도분 재산세 41,956,020원, 지방교육세 5,697,640원 합계 160,277,100원(= 30,028,870원 + 6,005,780원 + 31,590,240원 + 6,318,050원 + 32,233,750원 + 6,446,750원 + 41,956,020원 + 5,697,64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의료업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계속 의료시설을 추가 건립하고 있으며 아직 의료시설이 건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 환자들의 휴식, 재활을 위하여 산책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 이 사건 병원 건축면적이 9,281.23㎡이고 위 병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상 건폐율 제한에 따라 위 병원 부지로 필요한 면적은 46,406.15㎡이므로 위 면적은 의료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애초 위 병원 부지로 매입한 토지 65,670㎡에서 위 면적을 제외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은 [redacted]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이 사건에서 관계되는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 · 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 ·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은 [redacted]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redacted]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6. 12. 31.까지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사용'과 '사용'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농업법인의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데 있어서 '직접 사용'과 '사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동일하게 '직접 사용'과 '사용'을 구분하고 있다), 원고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redacted]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 등 또는 의료업 자체에 사용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3)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30,000㎡에 이르고 수목이 우거진 임야 상태로 원고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 등 또는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병원과 별도의 울타리로 구분되고 있고 가파른 경사면 등 발생으로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환자들의 휴식, 재활을 위한 산책로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 그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 등 또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는데, 위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지 않았을 뿐만 그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 등 또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이환기

판사 우경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 끝.